

## 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95호

## 정비창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해제(일몰) 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00호(2018. 4. 5.)로 정비구역 결정·고시된 정비창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7월 24일

서울특별시

## 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## ○ 정비구역 현황

| 구역명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치                       | 구역면적(㎡) | 정비구역<br>해제기한 연장 | 비고<br>(최초결정고시)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정비창전면 제1구역<br>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| 용산구 한강로3가<br>40-641번지 일대 | 71,901  | 2026. 8.29.까지*  | 서울특별시 고시<br>제2018-100호<br>(2018. 4. 5.) |

\*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해제기한 2년 연장

## 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제2호에 의거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함

3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(☎02-2133-4928)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(☎02-2199-7402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